

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(안)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4

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계과상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체계가 바뀌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군에서는 2005년 1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선 계획, 후 개발원칙으로 계획수립방식이 변화되어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,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추후 관리계획수립시 보전, 생산, 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며,
- 이번계획은 2020년 화순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화순군의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역명 :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
 - 용역회사 :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(대표 : 김영삼)
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(대표 : 오준호)
 - 계획의 범위
- 1) 시간적 범위
- 기준년도 : 2002년
 - 목표연도 : 2020년

2) 공간적 범위 : 화순군 행정구역 (786.211km²)

(도시지역 + 비도시지역)

○ 관련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

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3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4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5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6. 불 입 :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수립(안)